

외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제도*

김정운**

현재 전세계인이 등록할 수 도메인은 약 800여 개가 있으며 앞으로는 더 늘어나 등록가능한 도메인이 1,0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당사자 간의 합의, 제3자에 의한 조정과 소송이 있다. 당사자간 합의의 경우 사이버스쿼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판외 분쟁해결방법인 분쟁조정이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의 경우 ICANN에서 마련한 UDRP로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가 국가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에 위임되어 있어 도메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최상위도메인의 분쟁해결제도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 및 기관에서 도메인 관련 분쟁 대응 시 분쟁해결제도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라며 일부 대표적인 국가최상위도메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 서론

II. 외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연합

4. 영국

5. 중국

6. 일본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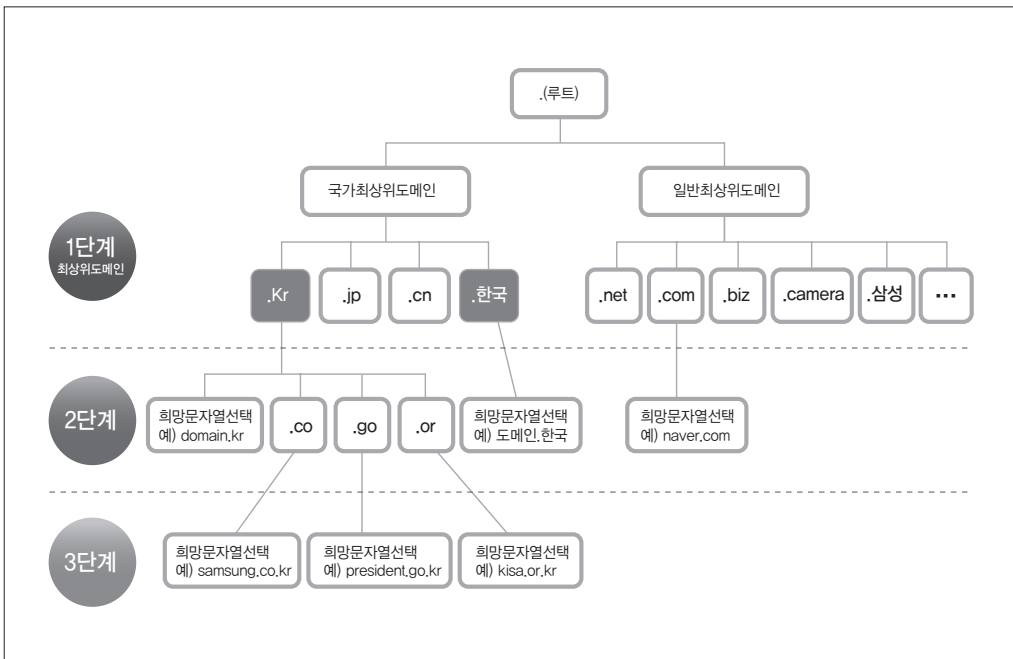
* 본고는 2014년 도메인이름 분쟁백서의 제6부의 내용을 요약,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협력팀 선임연구원(jwkim@kisa.or.kr)

I. 서론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있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없다.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은 루트(root)라 불리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도메인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과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이 있다.



[그림 1] 도메인 체계

일반최상위도메인은 전세계 누구나 사용 가능한 도메인으로 인터넷 초창기인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생성된 '.com(회사), .net(네트워크 제공자) .org(비영리기관)' 등 23개의 일반 최상위도메인이 있다. 또한 2013년 말부터 현재까지 생성되고 있는 '.training, .政務(정부, 중국어로 행정업무를 뜻함)' 등의 400여 개의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있다.

국가최상위도메인은 세계 각국의 ISO 3166에 따라 두 자리 영문 약자로 표현한 '.kr, .cn, .us' 등의 249개의 영문 국가최상위도메인과 각국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中國' 등

의 35개의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이 있다.

일반최상위도메인 관련 분쟁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¹에서 분쟁해결정책을 마련하여 별도의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반면,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경우, ICANN은 도메인 관련 분쟁해결에 대해서 각 국가의 국가최상위도메인 등록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최상위도메인 등록기관은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해결기관을 이용하여 도메인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국가최상위도메인 등록기관의 분쟁해결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등록기관이 자체적인 분쟁해결정책을 마련하고 자체 분쟁해결기관을 이용하여 자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영국, 덴마크, 미국, 캐나다, 칠레, 인도 등이 있다. 둘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ICANN이 지정한 국제 분쟁해결기관에 자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을 위탁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호주, 스위스, 프랑스 등 약 70여 개국에 이른다. 마지막 유형은 자체적인 분쟁해결정책이나 분쟁해결기관을 두지 않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이며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유형인 자체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해결기관을 두고 있는 외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메인이름 및 IP주소 등 글로벌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1998년 미국 상무성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

〈표 1〉 외국의 대표적인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기관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기관
.au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ding Edge Alternative Dispute Resolvers (LEADR) •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 Australian Branch (CIArb) • Institute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Australia (IAMA)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be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lgian Centre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 (CEPANI)
.ca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BCICAC) • Resolution Canada Inc.
.cn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s (CIETAC)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HKIAC)
.eu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zech Arbitration Court (CAC)
.hk, .香港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is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et á Íslandi hf. (ISNIC)
.it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D,D.– Centro Risoluzione Dispute Domini S.r.l. • MFSD S.r.l. • Registro.it • Studio Legale Tonucci & Partners
.jp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 (JIPAC)
.kr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IDRC)
.my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Kuala Lumpur (RCAKL)
.pl (폴란드)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bitration Court at the Polish Cha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se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ternet Infrastructure Foundation
.sg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apore Mediation Centre and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DNDRS)
.si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demic and Research Network of Slovenia (ARNES)
.tw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ience & Technology Law Center (STLC)
.uk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minet UK
.us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 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za (남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AIIPL)

2 .pl 관련 분쟁은 폴란드 내에서 등록되거나, 일방의 당사자나 쌍방의 당사자가 폴란드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Arbitration Court at the Polish Cha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에서 the Arbitration Court at the Polish Chamber of Commerce에 의해서 처리되며, 양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등록된 .pl 도메인에 대해서는 WIPO의 규정에 따라 WIPO에서 처리된다.

〈표 2〉 WIPO에 분쟁해결을 위탁하고 있는 국가최상위도메인

ccTLD 목록	
.AC (Ascension Island) .AE and امارات, (United Arab Emirates) .AG (Antigua and Barbuda) .AM (Armenia) .AO (Angola) .AS (American Samoa) .AU (Australia)	.BM (Bermuda) .BO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R (Brazil) .BS (Bahamas) .BZ (Belize)
.CC (Cocos Islands) .C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H (Switzerland) .CO (Colombia) .CR (Costa Rica) .CY (Cyprus)	.DJ (Djibouti) .DO (Dominican Republic)
.EC (Ecuador) .ES (Spain)	.FJ (Fiji) .FM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FR (France)
.GD (Grenada) .GT (Guatemala)	.HN (Honduras)
.IE (Ireland) .IO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IR (Islamic Republic of Iran)	.KI (Kiribati) .KY (Cayman Islands)
.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C (Saint Lucia) .LI (Liechtenstein)	.MA (Morocco) .MD (Republic of Moldova) .ME (Montenegro) .ML (Mali) .MP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MW (Malawi) .MX (Mexico)
.NL (Netherlands) .NR (Nauru) .NU (Niue)	.PA (Panama) .PE (Peru) .PH (Philippines) .PK (Pakistan) .PL (Poland) .PN (Pitcairn Islands) .PR (Puerto Rico) .PW (Palau)
.QA and قطر, (Qatar)	.RE (Reunion Island) .RO (Romania)
.SC (Seychelles) .SH (St. Helena) .SL (Sierra Leone) .SO (Somalia)	.TJ (Tajikistan) .TK (Tokelau) .TM (Turkmenistan) .TT (Trinidad and Tobago) .TV (Tuvalu) .TZ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G (Uganda)	.VE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G (Virgin Islands (British))
.WS (Samoa)	

II. 외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제도

서두에도 언급하였듯이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체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가최상위도메인의 분쟁해결정책을 살펴보면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분쟁해결정책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변형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표 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 유형

규정 유형	국가최상위 도메인
UDRP 변형모델	.au(호주), .be(벨기에), .ca(캐나다), .ch(스위스), .it(이탈리아), .mx(멕시코), .nl(네덜란드), .no(노르웨이), .se(스웨덴), .si(슬로베니아), .uk(영국), .us(미국)
독자모델	.cz(체코), .dk(덴마크), .eu(유럽연합), .hu(헝가리), .il(이스라엘), .nz(뉴질랜드), .pl(폴란드), .pt(포르투갈), .sr(세르비아)

UDRP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³을 규제하기 위해 ICANN에 의해서 마련된 정책으로 제4조 a항목에서 이하와 같이 적용 가능한 분쟁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i)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가지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 ii)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 ii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것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정인은 이전 또는 말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UDRP의 요건을 모델로 하고 있는 각국의 분쟁해결정책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유명상표나 회사이름, 단체이름 등을 비싼 값으로 되팔기 위한 판매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

1. 미국

미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 '.us'는 NeuStar, Inc.⁴가 관리한다. '.us' 도메인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성의 승인을 받은 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usDRP)와 usTLD Nexus Dispute Policy(usNDP) 2개의 분쟁해결정책이 있다. usDRP는 UDRP와 유사한 분쟁해결 정책이고, usNDP의 경우는 '.us'의 도메인 등록자격에 대한 규정이다. 또한, 2014년 6월 1일부터 usTLD Rapid Suspension Dispute Policy(usRS)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통일긴급정지제도(URS : 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⁵와 유사한 제도로 '.us' 도메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여러 정책에 따른 분쟁해결기관 중 전미중재원(NAF : National Arbitration Forum)⁶의 분쟁해결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쟁해결정책과 분쟁조정절차

(1) 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usDRP)

usDRP는 UDRP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분쟁에 대해 3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⁷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는 사용증거 및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단, UDRP의 경우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usDRP에서는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과 일치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수혜자(beneficiary)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usDRP의 경우도 UDRP와 유사한 방식으로 절차규칙과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절차 수수료는 <표 4>와 같다.

4 <http://www.neustar.us/>

5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newgtlds.icann.org/en/applicants/urs> 참조.

6 <http://www.adrforum.com>, usDRP의 경우,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http://www.adr.org>)도 함께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7 다만 표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만이 usDRP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등록 상표, 미등록 상표 또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상표, 상호, 인명 및 인격권이다. 그리고 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 전에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표 4〉 NAF usDRP 수수료⁸

단위 : US 달러

도메인 이름 개수	조정수수료	
	1인	3인
1 ~ 2개	1,300	2,600
3 ~ 5개	1,450	2,900
6 ~ 10개	1,800	3,600
11 ~ 15개	2,250	5,000
16개 이상	협의	협의

(2) usTLD Nexus Dispute Policy(usNDP)

‘.us’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은 usTLD Nexus Dispute Policy(usNDP)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상무성이 채택한 미국과의 연계성(nexus) 요건을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누구든지 이의제기를 통하여 말소 요청을 할 수 있다. usTLD의 연계성 요건은 usNDP 제3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i) 피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 (ii) 피신청인이 미국 또는 미국의 점유지 등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iii) 피신청인이 미국 또는 미국 점유지에 우선적 주거지를 갖지 아니한 경우
- (iv) 피신청인이 미국 또는 미국 점유지에 설립된 단체 내지 조직이 아닌 경우
- (v) 피신청인이 미국 또는 미국 점유지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내지 조직이 아닌 경우
- (vi) 피신청인이 미국 내에 사실상의 실체를 갖지 아니한 경우

usNDP는 UDRP와는 달리 분쟁조정기관에 의해서 초기 결정단계(Initial Provider Decisions)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이 등록인이 연계성 요건의 불충족에 대한 증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인이 증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을 30일(요구일로부터 기산, 달력일 기준)이내에 제

8 조정수수료는 보충규칙(Supplemental Rule) 9(c)(iv) 및 9(e)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지 않음.

출할 것을 요구한다. 답변이 제출되거나, 제출기간이 만료된 경우 분쟁조정기관에서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인의 조정인을 선임한다. 조정인은 등록인이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연계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조정인이 등록요건을 불충족하였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등록인에게는 30일 간의 결함을 치유하는 기간(Period to Cure)이 주어진다. 치유 기간 동안 등록인이 결함을 치유하였다고 조정인이 판단하는 경우 도메인 등록은 유지된다. 그러나 등록인이 결함을 치유하지 않았다고 조정인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등록인이 결함 치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은 말소된다.

〈표 5〉 NAF usNDP 조정수수료

단위 : US 달러

도메인 이름 개수	조정수수료
1개	700
2개	800
3 ~ 5개	850
6 ~ 10개	1,100
11 ~ 15개	1,250
16개 이상	협의

(3) usTLD Rapid Suspension dispute policy(usRS)

Neustar, Inc.에서는 ‘.us’ 도메인에 대해서 2014년 7월 1일부터 긴급정지제도(usRS)를 시행하였다. 이는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URS를 모델로 도입된 것이다. usRS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메인의 요건으로 URS와 동일하게 i) 해당 도메인 이름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ii)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나 이익이 없을 것, iii)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usRS의 분쟁해결기관은 NAF가 지정되었으며, 분쟁 해결절차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표 6〉 NAF usRS 분쟁해결 수수료

단위 : US 달러

비용 유형		납부자	비용		환불가능여부
신청비용		신청인	도메인이름 개수	요금	불가
			1~14	375	
			16~50	400	
			51~100	450	
			101 ~	500	
답변비용		피신청인	도메인이름 개수	요금	승리한 당사자에게 환불가능
			15~50	400	
			51~100	450	
			101 ~	500	
재심사 비용(기한 내)		피신청인	200		
재심사 기한 연장비용			100		
이의제기 비용	추가증거 없음	이의제기자	조정인 수	요금	불가
			1	300	
			3	950	
	추가증거 있음		조정인 수	요금	
			1	450	
			3	1,300	
usDRP 신청비용		usDRP 신청인	usRS를 신청한 동일한 도메인이름 및 당사자가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usDRP 신청한 경우 해당 조정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해줌		

2) 관계법령 – 연방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 S.C. § 1125(d))은 1999년에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법⁹으로 상표 또는 인명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희석시키는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매매하거나 사용하는데 대한 제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① 표지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거나 ② (a) 식별력 있는 표지와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b) 유명 표지와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9 이 법의 제정 전에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에 주로 적용되던 법은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으로 상표의 저명성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상업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이버스쿼팅 사건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정도로 유사하거나 희석시키거나 (c) 18 U.S.C. §706 (적십자와 관계있는 표지) 또는 36 U.S.C. §220506 (올림픽과 관계있는 표지)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그 도메인이름을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¹⁰

법원은 식별력이 있고 주지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거래·사용이 부정한 목적(bad faith intent)에 의한 것임을 판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¹¹

- (i)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가졌는지 여부(상표 내지 서비스표)
- (ii) 도메인이름이 그 보유자가 인식되는 법적 이름이거나 또는 별칭인지 여부
- (iii) 등록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도메인이름을 선사용하였는지 여부
- (iv)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적법한 비상업적인 사용인지 여부
- (v)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였는지 여부
- (vi)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이름을 되팔려고 했는지 여부
- (vii)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viii)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그 상표와 유사한 다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받았는지 여부
- (ix) 도메인이름에서 사용되는 표지의 독특성 또는 유명성의 정도

이 법은 상표의 공정한 사용이나 불평 사이트(gripe sites)를 포함한 헌법 수정 제1조가 보호하는 사용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¹² 또한 이 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관리기관과 등록대행기관의 책임이 제한되는데, 도메인이름 관리기관 등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신청·선등록 주의에 의하여 상표권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거절한 것, 이전 요구에 불응한 것,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정책 및 분쟁조정 규정에 의하여 내린 결정에 의하여

¹⁰ 15 U.S.C. § 1125(d)(1)(A)

¹¹ 15 U.S.C. § 1125(d)(1)(B)

¹² 15 U.S.C. § 1125(d)(1)(B)(ii). *Mayflower Transit, L.L.C. v. Prince*, 314 F. Supp. 2d 362 (D.N.J. 2004)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고객 불만을 표현하기 위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부당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¹³

2. 캐나다

캐나다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은 '.ca'로 CIRA(Canadian Internet Registration Authority)에서 관리한다. '.ca' 도메인에 대해서는 UDRP와 유사한 CIR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하 'CDRP')라는 분쟁해결정책과 분쟁해결정책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CIR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Rules¹⁴ 있고, ¹⁴ 분쟁해결기관으로는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BCICAC)¹⁵와 Resolution Canada Inc.¹⁶이 있다.

1) 분쟁해결정책

'.ca'의 분쟁해결정책인 CDRP는 UDRP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 PARAGRAPH 3(Basic For Complaint) 이하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도메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 되는 도메인이름은 이하와 같다.

- (a)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도메인이름이 등록되기 전에)와 관련된 표지(Marks)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 (b) 등록인이 3.4조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 (c) 등록인은 3.5에서 열거하는 사유와 같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것

(a)항목에서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지(Marks)에 대해서 3.2조에서 상세하게 설

13 15 U.S.C. § 1125(d)(2)(D)(ii)

14 현재 적용되고 있는 CDRP와 CIR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Rules은 2011년 8월 22일 개정된 버전 1.30이다. '.ca' 도메인 분쟁조정예 관한 정보는 <http://www.cira.ca/legal/cdrp/> 참조

15 BCICAC는 100명 이상의 조정인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http://bcicac.com/domain-name-disputes/selecting-a-panelist> 2014. 7. 17. 방문).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Centre d'arbitrage commercial national et international du Quebec(www.cacniq.org)을 통하여 프랑스에 분쟁조정 업무를 제공하기도 한다.

16 <http://www.resolutioncanada.ca>

명하고 있는데, UDRP와 달리 상표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일정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호¹⁷도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b)의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는 요소로 UDRP 제4조(c)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을 구별할 수 있는 등록인의 법적이름이거나(또는 이름이었거나), 성(Surname) 등과 같은 경우, 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의 비영리활동의 장소나 영업소의 지형적인 이름과 동일한 경우에는 정당화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2) 분쟁조정절차

CDRP는 분쟁조정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CIRA의 캐나다 거주요건(CPR : Canadian Presence Requirements For Registrants)을 충족하는 사람 혹은 단체만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캐나다에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캐나다에서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CDRP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영어와 프랑스어(영어와 혼용가능)를 이용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¹⁹ 이하의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표 7〉 .ca 분쟁해결 수수료

단위 : 캐나다 달러(5%의 상품 및 서비스세 포함)

신청 도메인 수	조정인 수당		신청 수수료	수수료 총액	
	1인	3인		1인	3인
1개	1,837.5	3,150	1,050	2,887.5	4,200
2 ~ 5개	2,362.5	4,725		3,412.5	5,775
6 ~ 10개	2,625	5,512.5		3,675	6,562.5

조정부 구성의 경우 3인 조정부가 강제된다.²⁰ 조정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명단에서 선정하는데, 각기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분쟁해결기관의 조정인 명부에서 최

17 3.2 Mark. A "Mark" is (d) The alphanumeric and punctuation elements of any badge, crest, emblem or mark in respect of which the Registrar of Trade-marks has given public notice of adoption and use pursuant to paragraph 9(1)(n) of the Trade-marks Act (Canada).

18 CDRP 1.4

19 CDRP Rules 3.2 Form of Complaint

20 CDRP Rules 6.4(이)는 덴마크, 노르웨이, 세르비아의 경우도 같다.

대 3명의 후보²¹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신청인에게 답변서가 제출하지 않았음을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3인 조정부를 1인 조정부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신청인이 정한 조정인 후보목록에 없는 조정인을 선임한다.²²

조정부는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전(말소)결정이 있는 경우, CIRA는 당사자 및 등록기관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 이전실행을 한다. 한편, CDRP의 경우 신청인에게 역도메인이름무단점유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부가 신청인에게 일정 비용(최고 \$5000)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³

〈표 8〉 '.ca' 분쟁조정 처리 건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BCICAC	2	6	6	19	15	12	15	9	8	5	25	19	141
Resolution Canada	1	4	3	7	5	8	11	14	11	10	15	16	105
소계	3	10	9	26	20	20	26	23	19	15	40	35	246

3.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통합 도메인인 '.eu' 를 2005년 12월에 도입하였다. '.eu' 는 국가연합에 고유의 도메인이름이 부여된 최초의 사례이며, 지난 1997년 미국이 지배하는 '.com'에 대항하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식화되었다. '.eu' 의 관리는 유럽도메인등록기구(EURid : European Registry of Internet Domain Names)가 맡고 있는데, 이 기구는 EU내 도메인 등록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EU 집행위와 계약을 체결한 비영리 기구이다. '.eu' 관련 분쟁은 법원에서 다룰 수 있으나 많은 '.eu' 도메인

21 분쟁조정기관에서는 이하의 방법으로 3인의 조정부를 선정한다.

- (a) 양 당사자가 공통으로 정한 조정인이 3명인 경우 해당 조정인 3명
- (b) 양 당사자가 공통으로 정한 조정인이 3명이 되지 못하거나 또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가 공통으로 정한 조정인 2명과 분쟁조정기관이 선정한 조정인 1명
- (c) 양 당사자가 공통으로 정한 조정인이 2명이 되지 못하거나 또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가 정한 1명씩 2명의 조정인과 분쟁조정기관이 선정한 1명의 조정인
- (d) 양 당사자가 공통으로 정한 조정인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기관이 선정한 조정인 3명

22 CDRP Rules 6.5

23 CDRP Rules 12.6

분쟁이 독자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eu’의 분쟁해결은 관리기관인 EURid²⁴가 지정한 체코중재법원(CAC : Czech Arbitration Court)이 맡고 있으며, 분쟁해결서비스를 2006년 개시한 이래 2013년까지 총 1,866건을 처리하였다.²⁵

1) 분쟁해결정책

‘.eu’ 관련 도메인 분쟁 신청은 유럽위원회 규제(Commission Regulation)²⁶ 제21조에서 투기적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도메인 등록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재판외의 절차나 재판절차에서 말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UDRP의 요건과 유사하며 등록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는 예시로서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부터 2년 동안 관련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²⁷ ADR절차가 시작될 무렵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ADR절차가 시작된 뒤로 6개월 내에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²⁸도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예시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2) 분쟁조정절차

‘.eu’ 분쟁해결절차는 UDRP와 진행방식이 유사하며 절차규칙(.eu ADR Rules)과 보충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절차진행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EU의 공식적인 언어중 하나로 진행되지만, 등록약관상의 언어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약관상의 언어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등록약관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서면 요청할 수 있는데 조정인은 재량으로 진행 사정을 고려하여

24 ‘.eu’ 도메인 분쟁조정에 관한 정보제공 사이트(www.eurid.eu/en/eu-domain-names/disputes, eu.adr.eu/)

25 http://eu.adr.eu/adr/disputed_domain_names/index.php

2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74/2004 of 28 April 2004 laying down public policy rul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and functions of the .eu Top Level Domain and the principles governing registration

27 Article 21.3.(b).(ii) the domain name has not been used in a relevant way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r

28 Article 21.3.(b).(iii) in circumstances where, at the time the ADR procedure was initiated, the holder of a domain name in respect of which a right is recognised or established by national and/or Community law or the holder of a domain name of a public body has declared his/its intention to use the domain name in a relevant way but fails to do so within six months of the day on which the ADR procedure was initiated;

승인할 수 있다.²⁹ 답변서 제출기간은 30일(영업일 기준, UDRP는 달력일 기준 20일)을 부여한다.³⁰

도메인 분쟁은 평균 분쟁을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결된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분쟁 도메인이름은 약 3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 신청인이 EU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여 '.eu'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9〉 체코법원 조정수수료³¹

단위 : 유로화

신청 도메인 수	조정인수		체코중재법원의 행정수수료		수수료 총액	
	1인	3인	1인	3인	1인	3인
1 ~ 5개	900	주조정인:1,200 부조정인: 600	400	700	1,300	3,100
6 ~ 10개	1,100	주조정인:1,500 부조정인: 800	500	900	1,600	4,000
11 ~ 20개	1,300	주조정인:1,800 부조정인: 900	600	1,100	1,900	4,700
21 ~ 30개	1,500	주조정인:2,100 부조정인:1,050	700	1,300	2,200	5,500
31 ~ 40개	1,700	주조정인:2,400 부조정인:1,200	800	1,500	2,500	6,300
41 ~ 50개	1,900	주조정인:2,700 부조정인:1,350	900	1,700	2,800	7,100
51개 이상	체코중재법원과 협의하여 결정					
언어변경 신청	250		250		500	
행정적 결함에 따른 신청취소 수수료	250		250		500	

4. 영국

영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인 '.uk'는 Nominet UK에서 관리하고 있다.³² Nominet UK는

29 .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ules A, General 3 (a),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0 .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ules B, Conduct of Proceedings 3 (a)

31 ※ 조정인 수당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복수 도메인에 대한 수수료는 동일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당사자이며 동일한 분쟁조정절차 언어가 모든 분쟁 도메인에 대해 적용되는 분쟁조정절차에만 적용

32 '.uk' 도메인 분쟁조정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http://www.nic.uk/disputes/drs/> 참조

1997년 이래 자체적인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해결 내부 부서를 만들어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다. 초기에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알선 내지 조정(mediation)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이러한 조정을 강제적인 효력이 없고, 다만 양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른 집행이 가능했을 뿐이다. 그러다 2001년 9월 Nominet UK는 UDRP와 유사한 'DRS Policy' 및 'DRS Procedure'라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여 분쟁해결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RS Policy와 DRS Procedure는 2008년 7월 29일 개정된 버전이다.³³

1) 분쟁해결정책

'uk'에 대한 분쟁은 '남용적인 등록(Abusive Registration)'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러한 남용적 등록의 예시는 DRS Policy 제3조 이하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UDRP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한 목적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의 사용 또는 사용을 협박하는 행위(threatening to use)가 마치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거나, 연관된 자나 사업으로 혼동 또는 혼동가능성을 일으키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잘 알려진 이름이나 상표권과 관련된 권리를 갖지 않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도메인(.uk 등)을 등록한 사실을 신청인이 증명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관리기관에 잘못된 연락정보를 기재하거나 도메인이름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에 의해서 등록된 경우³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신청이 접수되기 2년 전에 피신청인이 3번 이상 남용적 등록으로 인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남용적인 등록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RS Policy 제4조에서는 피신청인의 남용적인 등록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사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이는 UDRP 제4조 c항의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의 예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도메인이름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피신청인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피신청인이 양당사자의 서면 합의와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피신청인이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표지들과 다른 타입인 경우, 개인 또는 사업에 대해 오직 찬사(tribute)나 비평의 목적으로 공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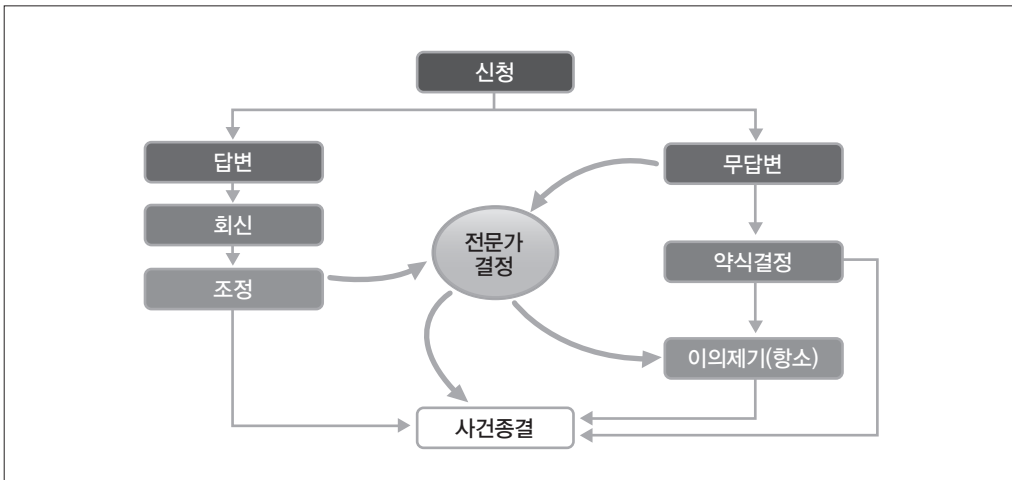
33 현재 적용되고 있는 DRS Policy와 DRS Procedure는 2008년 7월 29일 개정된 버전이다. DRS Policy : <http://www.nic.uk/disputes/drs/?contentId=5239> DRS Procedure : <http://www.nic.uk/disputes/drs/?contentId=5240>

34 이 경우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그리고 갱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 열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에서는 도메인을 대량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임을 선언하면서, 파킹페이지와 연결시키는 행위, Pay-Per-Click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남용적인 등록은 아니지만 조정인이 일정한 사항 이 일정한 사항은³⁵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분쟁조정절차

DRS Policy에 의한 분쟁조정은 조정(mediation)과 전문가 결정(expert decision)으로 나뉘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독립한 전문가에 의한 결정을 내린다. Nominet UK의 분쟁조정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쟁조정절차³⁷

신청은 Nominet UK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청 게시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Nominet UK은 해당 답변을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³⁷ 대부분의 분쟁이 조정단계에서

³⁵ 이 일정한 사항은 i. 도메인 이름의 특성(nature), ii. 도메인이름과 연결된 파킹페이지의 광고 링크의 특징, iii.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피신청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³⁶ <http://www.nominet.org.uk/disputes/resolving-domain-disputes/how-it-works>

³⁷ DRS Policy 5. a, b

해결이 되는데,³⁸ 이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는 사건의 경우 독립한 전문가 1인에 의한 전문가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약식결정(summary decision)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경우에만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패하지는 않는다.

전문가 결정은 이전, 사용정지 또는 말소가 가능한데, 전문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인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 결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좋은 도메인이름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한 경우 역도메인이름무단점유를 선언할 수 있다.

수수료는 이와 같으며, 약식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정식결정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표 10〉 .uk 분쟁조정 수수료³⁹

단위 : 파운드

신청 도메인 수	조정	전문가 결정 ⁴¹		항소
		약식결정	정식결정	
1 ~ 5개/신청인 1인	없음	200	750	3,000
6개 이상/신청인 2인 이상	없음	200	협의	3,000

5. 중국

중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인 '.cn'에 관한 분쟁조정은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CNNIC :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⁴¹가 제정한 「중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이름분쟁처리변법」 및 「중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이름분쟁처리변법 절차규칙」에 의하여 인정된 분쟁해결(재판외 분쟁처리)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분쟁해결기관으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IETAC

38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기간이 통상 2주 걸리는데 조정인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9 행정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전액 결정을 내린 전문가에게 지급된다(DRS Procedure 21, 참조. <http://www.nic.uk/disputes/drs/?contentId=5240>).

40 이는 전액 전문가 수당으로 지급되며 Nominet UK의 행정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41 '.cn' 도메인 분쟁조정에 관한 정보제공 사이트 <http://www1.cnnic.cn/S/CNym/cnzcfg/>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⁴²와 홍콩국제중재 센터(HKLIAC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⁴³가 있다.

1) 분쟁해결정책

2002년 9월 30일 CNNIC 분쟁해결정책(CNDRP : CNI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제정되었고 분쟁해결기관이 각각 보충규칙을 제정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분쟁해결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 (i)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민사권익을 갖는 명칭 혹은 표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
- (ii)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 혹은 그 주요부분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갖지 않는 경우
- (iii)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한 경우

2006년 2월 14일 CNDRP를 개정하면서 분쟁조정 신청 대상 도메인을 등록일로부터 2년 미만의 도메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동년 3월 17일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UDRP와 유사하게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규정(제10조)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 (i)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의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뿐만 아니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ii)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그 도메인에 관련이 있는 상표나 서비스마크 등의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확실한 평판(명성)을 구축한 경우
- (iii)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합리적 혹은 합법적으로 그 도메인이름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 공중을 기망하여 상업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은 경우

42 <http://dndrc.cietac.org/>

43 <http://www.hkiac.org/>

2) 분쟁조정절차

절차진행 언어는 당사자의 합의나, 조정인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중국어로 진행된다. HKIAC에 중재를 신청하는 문서를 제출한 후 3일 내로 중재 신청인은 중재 신청 시 기입한 조정부 유형(1인 또는 3인)과 분쟁조정 도메인 수에 따라 수수료를 분쟁해결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8일 내에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cn’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 건수(HKIAC 기준)는 2001년부터 2013년 까지 총 121건이 처리되었다.

〈표 11〉 .cn 분쟁조정 수수료(HKIAC 기준)

단위 : 중국 위안화(RMB)

신청 도메인 수	조정인수		행정수수료		수수료 총액	
	1인	3인	1인	3인	1인	3인
1개	4,000	주조정인:4,000 부조정인:2,000	4,000	6,000	8,000	14,000
2~5개	6,000	주조정인:6,000 부조정인:3,000	6,000	8,000	12,000	20,000
6~10개	8,000	주조정인:7,000 부조정인:4,000	8,000	9,000	16,000	24,000
10개 이상	HKIAC에 의해서 결정					

6. 일본

일본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인 ‘.jp’ 도메인의 분쟁조정은 해당 관리기관인 일본네트워크인포메이션센터(JPNIC : Japan Network Information Center)⁴⁴가 UDRP와 유사한 형식으로 2000년 7월 19일 제정한 ‘JP도메인명분쟁처리방침(JP-DRP)’ 및 ‘JP도메인명분쟁처리방침을 위한 절차규칙’에 의해 처리된다. ‘JP도메인명분쟁처리방침’과 관련된 규칙으로 주식회사 일본레지스트리서비스(JPRS)에서 제정한 ‘속성형(조직종별형) · 지역형 JP도메인명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범용JP도메인명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러한 등록규칙에 의해서 피신청인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기관이 수행하는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분쟁조정기관으로는 2000년 8월 21일에 JPNIC과 협정서에 따라

44 ‘.jp’ 도메인 분쟁조정에 관한 정보제공 사이트 <http://domainname.jp/report/dispute.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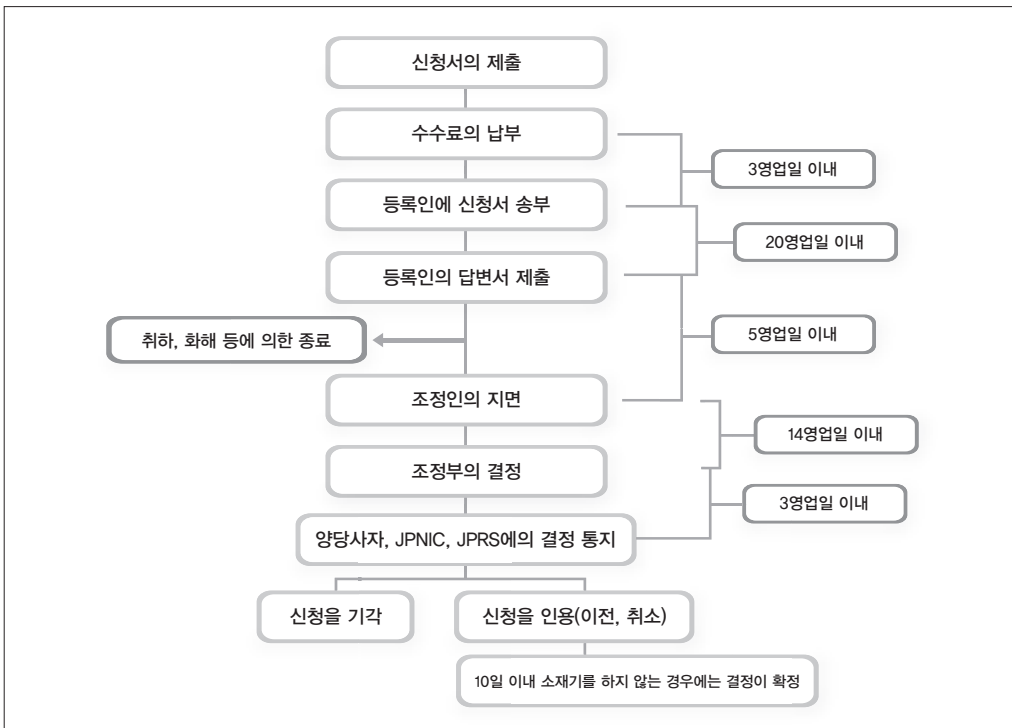
채택된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⁴⁵가 유일하다.

1) 분쟁해결정책

JP-DRP는 UDRP를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UDRP 규정을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일본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첫번째 요건에서 ‘신청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 상표 기타 표시와 동일 혹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상표 이외의 유명한 인명이나 영업표시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을 것’라고 규정하여 등록 또는 사용이라고 규정된 UDRP와 달리,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

2)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 기관인 센터의 ‘.jp’ 도메인명 분쟁처리 프로세스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분쟁조정절차(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45 <http://www.jp-adr.gr.jp/>

수수료는 JP 도메인이름 분쟁조정비용 규칙(JP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Fee Rules)에 따라서 부과된다.

〈표 12〉 .jp 분쟁조정 수수료 ⁴⁶

단위 : 일본 엔화(소비세 5% 포함)

조정인의 수	수수료
1명	189,000 (다만, 동일 신청서에서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이 4건 이상인 경우 4번째 건부터는 1개의 도메인이름 당 1만 500엔을 가산)
3명	378,000 (다만, 동일 신청서 상의 도메인이름이 4건 이상인 경우 4번째 건부터 1개의 도메인이름 당 2만 1000엔을 가산) 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3인 조정인을 선택한 경우 피신청인은 당 센터에 신청인이 납부한 것과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가 2000년 8월 21일 ‘.jp’ 도메인 분쟁조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말까지 처리한 건수는 총 116건이며 2011년 12건, 2012년 15건, 2013년 10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2건이 처리되었다.

3) 관계법령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 상품 등의 표시(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기타 상품 또는 용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2호).^{47·48}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조치로는 침해의 중지·예방청구(제3조) 및 손해배상청구(제4조)가 있다.⁴⁹

46 일본의 경우, 특이하게 제3조 청문회 비용(審問手数料), 기타비용(その他費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 비용의 경우, 해당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인과 등록인이 15,000엔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의 경우, 절차에 소요되는 통역, 감정, 증인, 토론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 원고 및 등록자의 50:50으로 미리 센터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7 2001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포함시킴

48 아울러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각각의 전자계산기를 식별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번호, 기호 혹은 문자의 조합에 대응하는 문자,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나 이들의 결합”으로 정의한다(제2조제9항).

49 제3조(침해금지·예방청구권) ① 부정경쟁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 혹은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정경쟁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 침해 행위를 조정

Ⅲ. 결론

국가최상위도메인의 등록건수와 분쟁해결신청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등장 등에 인해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일반최상위도메인 쪽으로 이동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특히 분쟁해결신청건수는 감소는 사이버스쿼팅 등 도메인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해결을 분쟁해결기관이 적정하게 수행하여 도메인 분쟁해결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래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관리 전략의 실패로 인하여 국내 도메인뿐만 아니라, 국외 국가최상위도메인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특히 홍보 등의 기업 브랜드 관리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요국들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여 도메인 분쟁을 예방하고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4 도메인이름분쟁백서

참고 사이트 :

www.neustar.us/

www.adrforum.com

en.wikipedia.org/wiki/Anticybersquatting_Consumer_Protection_Act

www.cira.ca

www.bcicac.com

www.resolutioncanada.ca

www.eurid.eu

www.nic.uk

www.nominet.org.uk

하는 물건(침해 행위에 의해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서도 같다)의 폐기, 침해 행위에 사용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손해배상) 고의 혹은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ww1.cnnic.cn
www.dndrc.cietac.org
www.hkiac.org
www.domainname.jp
www.ip-adr.gr.jp/